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의9서식] <개정 2025. 2. 18.>

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

통보서발급번호		
부품제원관리번호		
부품제작자	제작자명	
	부품제작자 등록번호	
부품명		
형식		
최초부품제작자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성능시험대행자 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